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대관시설 운영 지침

2016.12.01. 제정

2022.05.03. 개정

2023.05.22. 개정

2023.10.18. 개정

2025. 5. 2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센터의 시설과 기자재를 일정 기간 동안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강당, 일반강의실, 사무실을 말한다.
4. “부속시설”이란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컴퓨터 등 기본시설에 부수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1. 센터의 대관시설 운영은 관리팀이 총괄하며, 타 부서는 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2. 시설과 기자재의 유지·보수관리는 관리팀이 총괄하며, 계약된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대관 및 이용 범위)¹⁾

- ①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강당, 일반강의실, 세미나실(특수강의실 제외)
 2. 부속시설: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컴퓨터 등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3. 이용시설: 주차장

- ② 대관 목적은 교육, 강좌, 토론, 연습 등의 비영리 공익활동에 한하며,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사용하여야 합니다.

제5조 (사용 시간)

- ①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09:00~21:00
 2. 토요일: 09:00~17:00 (단, 분기 마지막 토요일은 대관 불가)
- ② 사용 시간 산정 시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6조 (사용료)²⁾

- ① 시설 사용료는 <별지 1호>에 따르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본시설, 부속시설, 이용시설 각각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토요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3. 주차요금은 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지침에 따른다.
- ② 사용료는 센터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방식 중 하나로 납부한다.
1. 센터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2. 센터 1층 사무실 카드결제(5일 이내 방문)
- ③ 현금 납부는 불가하다.

제7조 (대관신청)

-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 지정 양식(<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관 신청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가능하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전 승인 없는 영리 행위 또는 물품 판매
 4. 센터의 지침 위반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
 6. 사용 목적 불일치 또는 사용료 미납
 7.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교육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

- 8. 센터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경우
- 9. 기타 센터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대관 승인 및 통보)

- ① 센터는 대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인터넷, 유선 등)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내부 일정 및 공공성 확보를 고려하여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1. 국가적 행사 또는 센터 필요시 승인사항 변경·취소 가능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전염성 질환 보유자
 - 나. 만취자, 무단출입자
 - 다. 위험물 또는 혐오 물품 소지자
 - 라. 안전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사용 제한 및 취소)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 후에도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전 승인 없는 영리 행위 또는 물품 판매
 - 4. 센터의 지침 위반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
 - 6. 사용 목적 불일치 또는 사용료 미납
 - 7.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교육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 8. 센터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경우
 - 9. 기타 센터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및 제8조 제③항 2호에 해당 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신청인에 대해 2년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1. 서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목적의 경우
 - 2.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동일 목적의 경우

- ②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의 준수사항)

- ① 신청인은 시설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할 수 없다.
- ③ 센터는 필요 시 신청인에게 시설물 이용 각서(<별지 제4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의 설치 및 철거)

- ① 신청인이 행사에 필요한 장치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② 행사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③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④ 철거 후 10일 이내에 미수거된 설비는 센터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⑤ 기본 비품의 재배치 또한 센터 승인 후 진행되어야 하며, 종료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 ① 신청인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 전적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
단, 센터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장치로 인한 사고는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본 지침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위반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지침의 적용)³) 이 지침은 센터와 신청인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조례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를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근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대관 승인받은 것은 시행 전 지침에 따르며, 시행일 이후 승인 건부터 본 지침을 적용한다.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시 주의 사항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아래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올바르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사용 시간 및 절차

- 시설 사용은 허가된 시간(준비 및 철수 포함)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지정된 사용 시간 외 이용은 불가하며, 사용 전·후 담당자와 함께 상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시설 및 기자재 관리

- 사용 후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훼손·파손 시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책상, 의자, 좌석 배치는 사용 전 상태로 정돈해 주십시오.

3. 금지 사항

-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일체 불가합니다.
- 바닥·벽면·서랍 등에 실리콘, 접착제, 페인트, 비눗방울 등 사용을 금합니다.
- 음향기기 등 주요 장비는 담당자의 안내 없이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4. 강당 이용

- 책걸상 최대 100석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현수막 거치대 및 스크린이 비치되어 있으며, 사용 후 원상복구 바랍니다.

5. 주차 관련 안내

- 주차요금: 최초 30분 무료, 이후 5분당 150원(1일 시간 주차 기준)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8:00~22:00
 - 토요일: 09:00~18:00
- 이용 시간 외 출차 불가하며, 초과 체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센터 주차 공간은 매우 협소하므로,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본 센터는 전 구역 금연입니다.
- 사용료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제해 주십시오.
- 센터교육 및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물 이용자로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운영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대관 사용료 지침

1. 시설사용료

기본시설		기준시간	시간당 사용료(원)
강 당		1시간	30,000
강의실	일반강의실	1시간	20,000
	세미나실	1시간	10,000
부속시설		기준시간	시간당 사용료
빔프로젝터		1시간	10,000

사용 기준

- ① 기준시간: 사용 시간 외 준비시간과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
- ② 기준시간 외 초과 사용 시간 이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사용료 부과**
 - 3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부과
- ③ 토요일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20%** 가산
- ④ 대관 가능 시간
 - 주중(월~금): 09:00~21:00
 - 토요일: 10:00~17:00
 -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⑤ V.A.T 면제
- ⑥ 다음의 경우 50% 감면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최, 주관 행사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 주최, 주관 행사

2.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비고
1일 시간 주차	· 최초 30분 미만 무료 · 30분 이상: 900원, 초과 5분당 150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2급지 적용 금액의 40% 할인
※ 주중의 경우 주차부스에서, 토요일의 경우 1층 사무실에서 정산 후 출차 바랍니다.		

감면 및 면제

구분		대상
면제		국가 공무수행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 취재목적 언론기관 보도차량 모범납세자 스티커부착 차량
감면	100분의80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의사상자 / 독립유공자
	100분의50	경차 / 저공해자동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전기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100분의20	참전유공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① 감면 및 면제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③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시설 이용 상세 요금표

사용 시간 대비 이용 요금표 (준비시간, 철수 시간 포함, 단위: 원)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기본 시설	강당	주중	총 요금	30,000	6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발생 비용	30,000	30,000	3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토요일 120%	총 요금	36,000	72,000	108,000	120,000	132,000	144,000	156,000					
			발생 비용	36,000	36,000	3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일반강의실	주중	총 요금	20,000	4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발생 비용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토요일 120%	총 요금	24,000	48,000	72,000	84,000	96,000	108,000	120,000					
			발생 비용	24,000	24,000	24,000	12,000	12,000	12,000	12,000					
	세미나실	주중	총 요금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발생 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토요일 120%	총 요금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84,000					
			발생 비용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부속 시설	빔프로젝터	주중	총 요금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발생 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토요일 120%	총 요금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84,000					
			발생 비용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본 센터의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므로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한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호>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시설 대관 신청서

1. 사 용 시 설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일 자 : 년 월 일 시 분 ~
및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4. 사 용 인 원 : 명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시설 대관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기

- 단 체 명 :
 단 체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성 명 :
 신 청 인 주 소 :
 신청인 연락처 :

성명(대표자)

(인)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귀중

<별지 3호>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서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대관시설 운영 지침 제10조(사용료 특례)에 따라 대관 시설 사용료 감면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내용	단체명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일자 사용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감면 내용	감면 50%()			
감 면 사 유	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결 재 (승인심사)	담당자		팀장	센터장
	협조			

<별지 4호>

시설물 이용 각서

본 각서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있어 교육생들의 원활한 교육 진행 및 창업지원 활동 등을 우선하고 귀 단체의 행사 진행에 있어 더욱더 책임 있는 시설 사용을 숙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단체 _____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시설 이용을 함에 있어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정한 대관시설 운영 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훼손 시설물의 원상복구
- 향후 시설사용 불가(2년)
- 당일 강제 퇴실(시설사용료 환급 불가)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20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귀중